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서울특별시설관리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 】

서울특별시설관리공단(이하 본 기관)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의 공원에 설치·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보가 어떤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241대	공원 외곽, 화장실입구, 동물원 내, 외곽 및 상상나라, 놀이동산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 분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정	손성일	시설팀장	서울어린이대공원 02-450-9304
	공 원	김대홍	차장	서울어린이대공원 02-450-9318
		김영석	차장	서울어린이대공원 02-450-9300
		강명수	주임	서울어린이대공원 02-450-9307
	상 상	신재호	주임	상상나라 02-6450-9400
접근권한자		상기와 동일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황실(DVR,NVR)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30일) 만료시 저장 하드디스크에 덮어쓰는 방식으로 삭제합니다.(출력물은 파쇄)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는 직접관리하고 설비보수 등을 전문CCTV 업체에 위탁 관리합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화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수사기관 입회하에 본 공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꿈마루 상황실 및 상상나라 사무실

— **영상자료 제공방법** : 개인에게는 유출할수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의뢰 할 경우에만 협조 공문서를 확인 후 해당기관에 제공한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자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3월 27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자 : 2012년 3월 29일)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청구서				처리기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 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